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특별재난지역 중 지자체장 고시 농지의  
전용허가 특례 규정〉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17)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특별재난지역 중 지자체장 고시 농지의 전용허가 특례 규정 ..... | 2  |
| [참고자료] .....                             | 18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회용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 2025. 4. 17.
3. 회 부 일 : 2025. 4. 18.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은 이상 고온, 강수 부족, 강풍이 복합된 기후변화의 영향 속에서 발생한 복합재난으로, 산림뿐만 아니라 농경지, 어업, 공장, 주택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다수의 주택이 소실되어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켰음.

이에 따라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중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고시한 농지(농업진흥지역은 제외)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신속한 주거안정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

### Ⅲ. 검토의견

#### 1. 특별재난지역 중 지자체장 고시 농지의 전용허가 특례 규정

개정안은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농업진흥지역은 제외한다) 중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고시한 농지는 신고를 통해 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현행                                                                                                                                                         | 개정안                                                                                                   |
|------------------------------------------------------------------------------------------------------------------------------------------------------------|-------------------------------------------------------------------------------------------------------|
|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br>-----<br>----- <u>다음 각 호의 농지</u> -----<br>-----<br>-----<br>-----<br>-----. |
| <신설>                                                                                                                                                       | 1.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u>농지</u>                                                                        |
| <신설>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선포한 특별재난지역(농업진흥지역은 제외한다) 중 <u>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고시한 농지</u>              |
|                                                                                                                                                            | 부칙                                                                                                    |
|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가. 농식품부 의견

현행법상으로도 농·어업인 주택, 농업인 공동생활 편의 시설 등은 농지전용 신고로 설치 가능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지자체장이 농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 주민이 아닌 자(부채지주)도 농지를 소유하거나 농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제공받으면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어 악용의 소지가 있음.

현재 특정 지역(농촌특화지구, 진흥지역 밖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나. 검토의견

### (1) 산불 발생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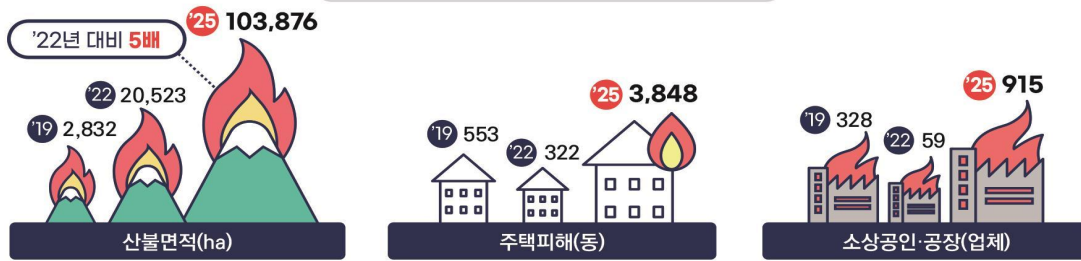
지난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울산 울주에서 초대형산불이 발생하였음. 이로 인하여 103,876ha의 산림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1987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피해 규모임.

---

1)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보고 참조

## 【 '25년 산불피해규모 비교 】

'19년 / '22년 / '25년 산불피해규모 비교



※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법」 제60조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는 발생한 재난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을 요구함.

###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특별재난지역 조건 】

| 호   | 재난종류 | 조 건                                                                      |
|-----|------|--------------------------------------------------------------------------|
| 1   | 자연재난 |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 1의2 |      |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 호 | 재난종류 | 조 건                                                                               |
|---|------|-----------------------------------------------------------------------------------|
| 2 | 사회재난 |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 3 | 공통   |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산불은 「재난안전법」 상 사회재난<sup>3)</sup>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서는 제2호 또는 제3호상의 재난 발생지역의 행정·재정능력으로는 재난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규모, 산불확산 양상, 과거 특별재난지역 선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월 22일 경남 산청군, 3월 24일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및 경남 하동군, 3월 27일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8개 시·군의 피해 현황에 대하여, 인명피해 183명(사망 27명, 부상 156명)<sup>4)</sup>, 재산피해 총 1조 818억원(사유시설 5,175억원, 공공시설 5,643억원)으로 보고함.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4) 공무원 1명과 진화대원 3명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 【 특별재난지역 선포 8개 시·군 재산피해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            | 피해물량                    | 피해액       |         |
|-------------------------|------------|-------------------------|-----------|---------|
| 총 계                     |            | -                       | 1,081,786 |         |
| 사유시설 계                  |            | -                       | 517,473   |         |
| 주택                      | 전파(동)      | 3,592                   | 338,663   |         |
|                         | 반파(동)      | 256                     | 11,589    |         |
|                         | 세입자(세대)    | 358                     | -         |         |
|                         | 주거불가능(세대)  | 572                     | -         |         |
| 농·어업시설(건)               |            | 6,106                   | 60,848    |         |
| 임·축산시설(건)               |            | 641                     | 20,525    |         |
| 농기계(대)                  |            | 17,158                  | 34,900    |         |
| 농작물 / 산림작물(ha)          |            | 3,419                   | 45,014    |         |
| 가축(마리) / 꿀벌(군) / 곤충(kg) |            | 22,061 / 24,509 / 8,265 | 4,673     |         |
| 수산물(마리)                 |            | 274,365                 | 1,088     |         |
| 어망어구 / 어선(건)            |            | 30                      | 173       |         |
| 공공시설 계                  |            | -                       | 564,313   |         |
| 산림청                     | 산림<br>(ha) | 국유림                     | 11,218    | 41,588  |
|                         |            | 사유림                     | 92,658    | 352,739 |
|                         | 산림시설(건)    |                         | 324       | 15,218  |
| 행안부                     | 도로(건)      |                         | 57        | 13,526  |
|                         | 공공건물 등(건)  |                         | 86        | 3,520   |
|                         | 마을기반시설(건)  |                         | 17        | 7,269   |
| 환경부                     | 환경기초시설(건)  |                         | 6         | 2,095   |
|                         | 상수도 등(건)   |                         | 68        | 26,815  |
| 유산청                     | 국가유산(건)    |                         | 29        | 45,058  |
| 국방부                     | 군사시설(건)    |                         | 4         | 663     |
| 국토부                     | 국도(건)      |                         | 15        | 6,566   |
| 농식품부                    | 수리시설(건)    |                         | 103       | 3,433   |
| 문체부                     | 문화·체육시설(건) |                         | 37        | 34,193  |
| 복지부                     | 복지시설 등(건)  |                         | 16        | 10,806  |
| 산업부                     | 에너지시설(건)   |                         | 5         | 472     |
| 해수부                     | 해양시설(건)    |                         | 2         | 353     |

※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히 이번 (초)대형산불에서는 주택의 전파·반파, 도로·공공건물·마을기반시설·상수도·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피해, 국가유산의 피해<sup>5)</sup>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수습·복구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공공요금 감면 등 36개 항목의 간접지원<sup>6)</sup>이 이루어짐.

이에 경북·경남·울산의 3개 시·도의 8개 시·군에 대해서는 긴급재정 지원으로 특별교부세(재난안전특교세) 307억원과 구호사업비 3.8억원이 지원되었고, 복구비 총 1조 8,809억원(국비 1조 2,136억원, 지방비 6,673억원)의 복구계획도 수립되었음.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번 (초)대형산불에 대하여 ① 주거 분야(주거 지원, 임시조립주택 지원 등), ② 농·어·임·축산업 분야(지원단가 상향, 생계비 지원 등), ③ 마을공동체 복원 추진(마을공동체 및 일상회복 지원 시설 시범사업 추진 등) 및 ④ 기타(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송이 피해 임가 생계비 지원 등) 지원을 계획함.

### 【 이번 (초)대형산불에 대한 중점 지원사항 】

#### ○ 주거분야

- (주거 지원) 주택 전·반파자, 세입자 대상 현실성 있는 지원 위해 現 지원단가 상향 지원  
※ 전파 +60백만원(반파 50%), 세입자 +5백만원
- (임시조립주택) 총 2,996동(개당 44백만원)에 대한 국고 50% 지원

5) YTN, “천년 고찰 고운사 전소...국가유산 재난 첫 ‘심각’ 발령”, 2025. 3. 25., 2025. 5. 12. 확인  
[https://www.ytn.co.kr/\\_ln/0106\\_202503252229233466](https://www.ytn.co.kr/_ln/0106_202503252229233466)

6) 사회재난 간접지원 항목(36개, 관계기관별 지원)은 참고자료1 참조

○ 농·어·임·축산업 분야

- (지원단가 상향) 주요 작물의 대파비(代播費) 및 농·어업, 임·축산시설, 농기계 지원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피해 복구단가 현실화
- (생계비 지원) 농·축가의 생계 안정을 위해 피해 규모·종류별로 생계비 최대 12개월 차등 지원

○ 마을공동체 복원 추진

-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소멸지역을 고려하여, 단순 복구 차원을 넘어 마을 공동체 및 일상회복 지원 시설 시범사업 추진, 향후 추가 확대 예정
- ※ 도시재생사업(국토부) 2개소, 지특사업(신규) 5개소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52조를 준용하여 추진(재해복구사업 추진 시 일반사업보다 최대 24개월 단축 가능)

○ 기타 지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확대, 피해 중소기업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국고 100% 지원
- ※ 소상공인 지원금 5백만원 → 10백만원(+5백만원), 구호기금 2백만원 포함
- (송이) 피해 임가별로 생계비(2인 기준 1.2백만원) 2개월 지원

※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한편, 이번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외에 연도별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2회에서 4회 정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음.<sup>7)</sup>

【 연도별 특별재난지역 선포 횟수 】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합계      | 0    | 2    | 2    | 3    | 3    | 3    | 2    | 6    | 4    |
| 자연재난 관련 | 0    | 2    | 2    | 3    | 2    | 2    | 2    | 3    | 3    |
| 사회재난 관련 | 0    | 0    | 0    | 0    | 1    | 1    | 0    | 3    | 1    |

※ 자료: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7) 연도별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의 구체적인 사항은 참고자료2 참조

## (2) 특별재난지역 중 지자체장 고시 농지의 전용허가 특례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농업진흥지역 제외) 중 지자체장이 고시한 농지의 경우 전용허가 없이 신고를 통해 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산림뿐만 아니라 농경지, 어업, 공장, 주택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주택이 소실되어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게 되었음.

### 【 이번 산불로 인한 주택피해 현황 】

| 구 분       | 피해물량  | 피해액(백만원) |
|-----------|-------|----------|
| 전파(동)     | 3,592 | 338,663  |
| 반파(동)     | 256   | 11,589   |
| 세입자(세대)   | 358   | -        |
| 주거불가능(세대) | 572   | -        |

※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전파되거나 반파된 자와 세입자에 대하여 보상 단가를 상향하여 지원할 계획<sup>8)</sup>이고, 임시조립주택의 설치에 대해서도 국고로 50%를 지원할 예정임.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고시한 농지(농업

8) (주거 지원) 주택 전·반파자, 세입자 대상 현실성 있는 지원 위해 現 지원단가 상향 지원{전파 +60백만원(반파 50%), 세입자 +5백만원}

(임시조립주택) 총 2,996동(개당 44백만원)에 대한 국고 50% 지원

진흥지역 제외)의 경우 전용 신고가 가능하게 하여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건립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보다 간소화된 전용신고 절차를 통해 주택 건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즉,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친 후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행위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이 법 제34조<sup>9)</sup>에 따르면 농지전용의 허가권자는 농식품부장관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sup>10)</sup>에 의해 전용면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되어 있음.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농지 전용허가 절차를 살펴보면, 농지

---

9)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 「농지법 시행령」 제71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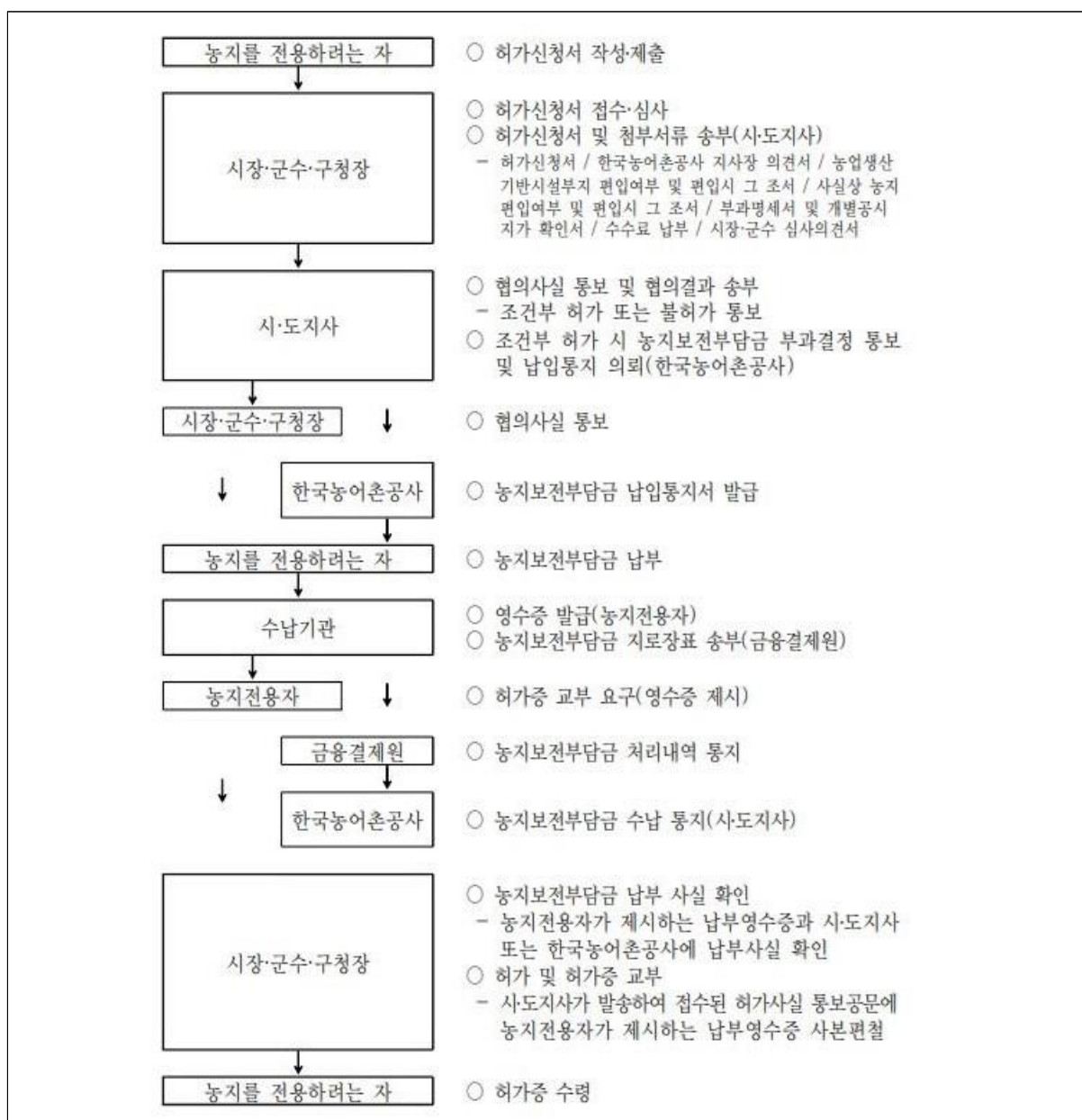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변경허가 및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각 목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둘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변경허가 및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각 목 생략>

를 전용하려는 자가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 등이 법령상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시·도지사가 허가를 통보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가 확인된 후 허가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20일의 기간이 소요됨.

### 【 농지전용 허가 절차(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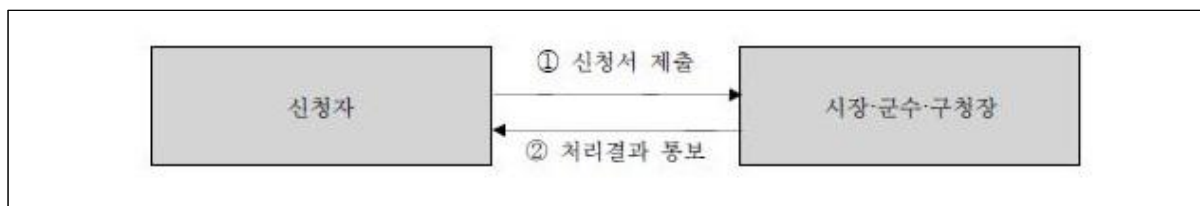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p.269~270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대한 협의·사실  
통보 절차가 생략되어 농지전용 허가에 10일의 기간이 소요됨.

한편, 농지전용신고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신고에 따라 시장·군  
수 등이 이 법의 적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데 10일  
의 기간이 소요됨.

### 【 농지전용 신고 절차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p.358

이에 주택건축의 사전 단계로서 실제 농지의 전용에 소요되는 기간  
은 허가와 신고 절차 간 사실상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반면, 심사항목과 심사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즉, 농지전용신고의 심사기준은 설치자 등 요건 부합 여부와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농어촌생활환경 피해 여부 등에 한정되는 데 반  
하여<sup>11)</sup>, 농지전용허가의 경우 시설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여부, 전용  
면적의 적정성 여부, 생산기반정비 여부, 집단화 정도, 연쇄적 농지잠  
식 우려 등 농지 보전 필요성 등을 모두 심사<sup>12)</sup>하도록 되어 있음<sup>13)</sup>.

11) 「농지법 시행령」 제35조(농지의 전용신고) 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  
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법 제35조 및 이 영 제33조제1항제5호·제  
6호 및 제36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12) 「농지법 시행령」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

심사방식에 있어서도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전용 신고 사항이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리를 하여야 하나<sup>14)</sup>, 농지전용허가의 허가 기준은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있고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sup>15)</sup>되고 있음.

### 【 농지전용 허가·신고제도 비교 】

| 구 분           | 허 가                                                                                           | 신 고                                                                                      |
|---------------|-----------------------------------------------------------------------------------------------|------------------------------------------------------------------------------------------|
| 대상 시설<br>(부지) | 농지전용하는 모든 시설<br>* 농지전용신고 시설이더라도 설치자 요건에 부적합한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대상                            | 농업인주택, 농업용창고, 농수산물유통·가공 시설, 농업인 공동 편의·이용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양식(어)장, 수산종묘 배양시설 등 농어업관련시설 |
| 허가 권자         | 농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 (면적에 따라 위임)                                                            |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자체 사무 위임 등에 따라 주로 읍·면장이 수리                                                  |
| 심사 기준         |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농어촌생활환경 피해 여부<br>시설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여부<br>전용면적의 적정성 여부<br>생산기반정비 여부, 집단화 정도, 연쇄적 농 |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농어촌생활환경 피해 여부<br>설치자 등 요건 부합 여부                                            |

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목 생략>
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목 생략>
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목 생략>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13) 보다 자세한 기준은 참고자료 참조

14) 93누6959 판결

15) 2017두48956 판결

| 구 분             | 허 가                                   | 신 고      |
|-----------------|---------------------------------------|----------|
|                 | 지잠식 우려 등 농지 보전 필요성<br>·전용목적 사업의 실현성 등 |          |
| 농지<br>보전<br>부담금 | ·100% 부과 원칙<br>* 시설에 따라 차등 감면         | ·100% 감면 |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 제출자료('25.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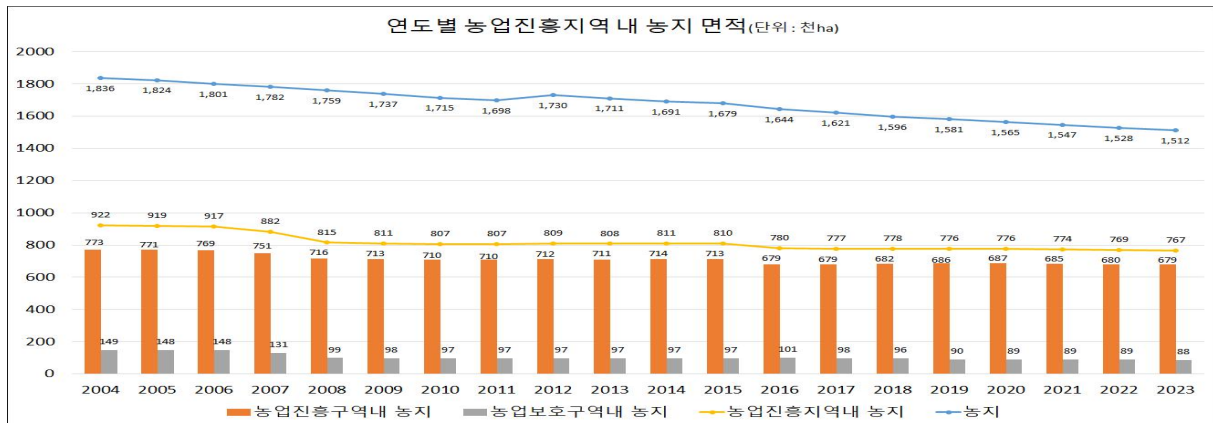
이와 같이 농지의 전용에 있어 신고를 하는 것이 허가를 받는 것보다 상당히 용이하므로 전용신고 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신속하게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농지전용 허가 목적은 무분별한 농지전용으로 인한 농지 훼손을 방지하는 데 있고, 최근 10년간(2014~2023) 농지면적이 19만 9,000ha 감소(△13.2%)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농지 면적 등 감소 추이 】

| 구 분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 ■ 농지면적(천ha)        | 1,691 | 1,679 | 1,644 | 1,621 | 1,596 | 1,581 | 1,565 | 1,546 | 1,528 | 1,512 |
| ■ 농업진흥지역(천ha)      | 1,036 | 1,036 | 994   | 988   | 987   | 986   | 987   | 986   | 986   | 986   |
| - 진흥구역             | 927   | 927   | 862   | 849   | 842   | 840   | 841   | 840   | 840   | 840   |
| - 보호구역             | 109   | 109   | 132   | 139   | 145   | 146   | 146   | 146   | 146   | 146   |
|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천ha) | 811   | 810   | 780   | 777   | 778   | 776   | 776   | 773   | 769   | 766   |
| - 진흥구역 농지          | 755   | 754   | 705   | 700   | 698   | 696   | 696   | 693   | 690   | 687   |
| - 보호구역 농지          | 56    | 56    | 75    | 77    | 80    | 80    | 80    | 80    | 79    | 79    |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 제출자료('25.1.20)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와 제출자료('25.1.20)

먼저, 현행법 제35조제1항제1호16)에 따르면 농어업인 주택(농·어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세대 등) 등 농어업인의 생활·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은 농지전용 신고 제도를 통해 이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농어업인이 아닌 농어촌주민을 위한 주택 건립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농지 외 다른 토지를 주택의 부지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농지 전용허가에 대한 예외 허용이 반드시 필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와 함께 개정안과 같은 예외를 허용할 경우 농지 소유자가 이를

- 16)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농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도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에서의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 특례는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주거 안정에의 기여 측면과 국가 차원에서 우량 농지 보전의 필요성, 농지전용허가 절차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특례가 적용되는 전용신고 대상 등을 보다 면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의 취지가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전용신고 특례의 대상을 주민의 주거 용도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선포 이후 해제 등의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를 인정하더라도 그 기한을 특정하여 한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sup>17)</sup>

|              |
|--------------|
| 문 의 처        |
| 02)6788-5415 |

17) 관련 입법례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 당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1호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 참 고 자 료

## 참고1

## 사회재난 간접지원 항목

| 구분        | 지원항목                      | 지원기준                                                                                                                                                                                                                                                                                                                                                                                                                                                     | 관계법령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국세 납부 유예                  |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                                                                                                                                                                                                                                                                                                                                                                                                                                 | 「국세기본법」 제6조<br>「국세징수법」 제13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채납처분 유예 및 감면 |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국민연금 납부 예외                | 최장 12개월 연금납부 예외 (연장 사유 지속 시 납부 예외 연장 가능)                                                                                                                                                                                                                                                                                                                                                                                                                 | 「국민연금법」 제91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수도법」 제38조<br>「하수도법」 제65조<br>지자체 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재해복구자금 융자                 | <table><tr><th>분야별</th><th>제공기관</th><th>상환조건</th><th>이자</th></tr><tr><td>농업</td><td>농협</td><td>5년거치 10년상환</td><td>1.5%</td></tr><tr><td>어업</td><td>수협</td><td>"</td><td>"</td></tr><tr><td>임업</td><td>산림조합</td><td>"</td><td>"</td></tr><tr><td>주택</td><td>우리은행</td><td>3년 거치 17년 상환</td><td>"</td></tr><tr><td rowspan="2">중소기업·소상공인</td><td>일반은행</td><td>2년 거치 3년 상환</td><td>2.0%</td></tr><tr><td>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td><td>"</td><td>1.9%</td></tr></table> | 분야별                                          | 제공기관 | 상환조건 | 이자 | 농업 | 농협 | 5년거치 10년상환 | 1.5% | 어업 | 수협 | " | " | 임업 | 산림조합 | " | " | 주택 | 우리은행 | 3년 거치 17년 상환 | " | 중소기업·소상공인 | 일반은행 | 2년 거치 3년 상환 | 2.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 1.9% | 「농어업재해대책법」<br>「주택도시시기금 운용계획」<br>「소상공인법」 제21조<br>「중소기업 진흥법」 제61조, |  |
| 분야별       | 제공기관                      | 상환조건                                                                                                                                                                                                                                                                                                                                                                                                                                                     | 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업        | 농협                        | 5년거치 10년상환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업        | 수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업        | 산림조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택        | 우리은행                      | 3년 거치 17년 상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소기업·소상공인 | 일반은행                      | 2년 거치 3년 상환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br>- 사망·주택전과 : 500만원<br>- 재산 1,000만원 이상 피해시 50만원 등<br>※ 화재 이외 사회재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만 지원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농기계 수리지원                  | 농기계 유·무상 수리<br>*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기계회사·수리업체와 지원·협조체계가 구축된 경우 지원가능                                                                                                                                                                                                                                                                                                                                                                                              | 민간 자율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br>-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지원                                                                                                                                                                                                                                                                                                                                                                                                            | 「공간정보관리법」 제106조,<br>「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병역법」 제61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등 감면     | 재난 피해 발생 시 사용하지 못하는 국·공유재산, 소득이 감소된 국유림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 「국유재산법」 제34조<br>「공유재산법」 제24조,<br>「국유림법」 제23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서명확인법」 제14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 재난으로 상속재산 멸실·훼손 시 손실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과태료 징수 유예                 | 재난피해로 과태료 납부 곤란 시 과태료 납부기한 등 연기(1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 재난 등으로 차량 운행 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검사기간 연장·유예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위기가족 긴급지원                 |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 농지임대료 감면                  | 맞춤형농지지원 사업(한국농촌공사 시행)에 대해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30% 이상인 농업인 임대 농지를 피해율에 따라 임대료 차등 감면 (45~100%)                                                                                                                                                                                                                                                                                                                                                                     | 「농어촌공사법」 제18조~제24조의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지원항목              | 지원기준                                                                                                  | 관계법령                           | 비고              |
|----|-------------------|-------------------------------------------------------------------------------------------------------|--------------------------------|-----------------|
| 17 | 공공임대 주거 지원        |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                 |
| 18 | 우체국 예금보험료 납입 유예 등 | 재난피해자에 대한 우체국 보험료 납입유예(6개월), 통장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                 |
| 19 | 법률지원 서비스          | 지자체 요청 시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인력 파견                                                                              | -                              |                 |
| 20 | 의약품 중복처방 제한 예외 적용 | 재난피해자의 의약품 중복처방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 허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                 |
| 21 |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연기   | 재난피해자의 예비군 훈련 연기                                                                                      | 「병역법」 제61조<br>「예비군법」 제5조       |                 |
| 22 |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 당해연도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                 |
| 23 |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       | 재난피해자 중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자의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2년 이내)                                                          |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1조                |                 |
| 24 |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 피해정도에 따라 30~50% 경감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 항목 |
| 25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 |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                 |
| 26 | 전기요금 감면           |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침수 및 파손은 1개월분의 50% 감면)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                 |
| 27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br>-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br>- (취사·난방용) 전파 12,400원, 반파·침수 6,200원 | 「천연가스공급규정」(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        |                 |
| 28 | 지역난방요금 감면         | 재난피해로 인해 열공급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열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열공급규정」(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           |                 |
| 29 | 유·무선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 시내·인터넷 전화 월 요금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 요금 50% 감면<br>이동전화 월 요금 최대 12,500원 감면<br>주거시설 유선·전파·반파 시 해지 위약금 면제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                 |
| 30 |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 유료방송 서비스(IPTV, 케이블방송, 위성) 요금 감면,<br>주거시설 유선·전파·반파 시 해지 위약금 면제<br>※ 감면을 및 지원항목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             | -                              |                 |
| 31 | 특허료·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및 소상공인의 특허료, 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3조             |                 |
| 32 | 전파사용료 감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전파법」 제67조                     |                 |
| 33 | TV 수신료 면제         | TV 수상기 등의 수신료 일정기간 면제<br>※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방송법」 제64조                     |                 |
| 34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재난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신·증·이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br>※ 단독주택 부지의 총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한정                                  | 「농지법」 제38조                     |                 |
| 35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 재난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신·증·이축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br>※ 단독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위한 산지의 총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한정                   | 「산지관리법」 제19조                   |                 |
| 36 |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 당해연도 잔여 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 면제                                                                               | 「병역법」 제49조<br>「예비군법」 제5조       |                 |

※ 자료: 재난안전대책본부

## 참고2

##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 년도   | 구분 | 선포일                               | 선 포 내 용                                                                                                                                                                                                                                                                                                                                                                                                                                                      |
|------|----|-----------------------------------|--------------------------------------------------------------------------------------------------------------------------------------------------------------------------------------------------------------------------------------------------------------------------------------------------------------------------------------------------------------------------------------------------------------------------------------------------------------|
| 2014 | 사회 | ‘14.4.21                          | 2014. 4. 16.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전라남도 진도군, 경기도 안산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      | 자연 | ‘14.9.5.                          | 2014. 8. 25. 호우 관련 부산 북·금정·기장, 경남 창원·고성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 2016 | 자연 | ‘16.9.22                          | 2016. 9. 12. 지진 관련 경북 경주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      | 자연 | ‘16.10.10<br>‘16.10.17            | 2010. 10. 3.~6. 제18호 태풍 차바 관련<br>(10.10.)울산북구,울주에대해특별재난지역선포<br>(10.17.)부산사하,경북경주,경남거제·통영·양산,제주도에대해특별재난지역<br>선포                                                                                                                                                                                                                                                                                                                                               |
| 2017 | 자연 | ‘17.7.27                          | 2017. 7. 14.~16. 호우 관련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에 대해 특별재<br>난지역 선포                                                                                                                                                                                                                                                                                                                                                                                                     |
|      | 자연 | ‘17.11.20                         | 2017. 11. 15. 지진 관련 경북 포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 2018 | 자연 | ‘18.7.18                          | 2018. 6. 26.~7. 4. 호우 및 제7호 태풍 뿌라빠룬 관련 전남 보성(보성·<br>회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      | 자연 | ‘18.9.17                          | 2018. 8. 23.~24. 제19호 태풍 솔릭 및 8. 26.~9. 1. 호우 관련 전남<br>완도(보길),<br>경기연천(신서·중·왕징·장남),경남함양(함양·병곡)에대해특별재난지역선포                                                                                                                                                                                                                                                                                                                                                    |
|      | 자연 | ‘18.10.24                         | 2018. 10. 4.~7. 제25호 태풍 콩레이 관련 전남 고흥(동일)·완도(청산·소안)<br>경북영덕·경주(외동·양북),경남거제(일운·남부)에대해특별재난지역선포                                                                                                                                                                                                                                                                                                                                                                  |
| 2019 | 사회 | ‘19.4.6.                          | 2019. 4. 4. ~ 6. 강원 동해안 산불 관련 강원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br>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      | 자연 | ‘19.9.20                          | 2019. 9. 6.~7. 제13호 태풍 링링 관련 인천 강화, 전남 신안(흑산)에<br>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      | 자연 | ‘19.10.10<br>‘19.10.17            | 2019. 10. 1.~4. 제18호 태풍 미탁 관련<br>(10.10.)강원삼척,경북울진·영덕에대해특별재난지역선포<br>(10.17.)강원강릉(강동·옥계·사천)·동해(망상),전남해남·진도(의신),경북경<br>주·성주에대해특별재난지역선포                                                                                                                                                                                                                                                                                                                         |
| 2020 | 사회 | ‘20.3.15                          |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대해 특별재난지역<br>선포                                                                                                                                                                                                                                                                                                                                                                                                               |
|      | 자연 | ‘20.8.7.,<br>‘20.8.13<br>‘20.8.24 | 2020. 7. 28.~8. 11. 호우 관련<br>(8.7.)경기안성,강원철원,충북충주·제천·음성,충남천안·아산에대해특별재난<br>지역선포<br>(8.13.)전북남원,전남구례·곡성·담양·화순·나주·함평·영광·장성,경남하동·합<br>천에대해특별재난지역선포<br>(8.24.)광주북·광산·남(효덕·대촌)·동(학운·지원2)·서(유덕·서창),대전동(중양),<br>경기이천·연천·가평·용인(원삼·백암)·포천(이동·영북)·양평(단월),강원화천·<br>양구·인제·춘천(동·남·남산)·홍천(홍천·화촌)·영월(영월·남),충북영동·단양·<br>진천(진천·백곡)·옥천(군서·군북)·괴산(청천),충남금산·예산,전북완주·진안·<br>무주·장수·순창·임실(성수·신덕)·고창(아산·공음·성송),전남광양(진월·다압)·<br>순천(황전),경북봉화(봉성·소천),경남산청·함양·거창·의령(낙서·부림)에대해<br>특별재난지역선포 |
|      |    | ‘20.9.15<br>‘20.9.23              | 2020. 9. 1. ~ 3.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2020. 9. 6. ~ 7. 제10호 태풍<br>하이선 관련<br>(9.15.)강원삼척·양양,경북영덕·울진·울릉<br>(9.23.)부산기장(기장·일광),강원강릉·인제·고성·속초(대포)·평창(봉평·진부·<br>대관령),경북포항·경주·청송(청송·주왕산·부남·파천)·영양(영양·일월·수비),                                                                                                                                                                                                                                                               |

| 년도   | 구분 | 선포일                 | 선 포 내 용                                                                                                                                                                                                                                                                                                                                                                       |
|------|----|---------------------|-------------------------------------------------------------------------------------------------------------------------------------------------------------------------------------------------------------------------------------------------------------------------------------------------------------------------------------------------------------------------------|
|      |    |                     | 경남거제(동부·장평)·양산(상북)·남해(상주·남), 제주(애월)                                                                                                                                                                                                                                                                                                                                           |
| 2021 | 자연 | '21.7.22            | 2021. 7. 5 ~ 8. 집중호우 관련<br>(7.22.)전남장흥·강진·해남, 전남진도(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에 대해<br>특별재난지역선포                                                                                                                                                                                                                                                                                           |
|      | 자연 | '21.9.6.            | 2021. 8. 24 ~ 25.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관련<br>(9.6.)경북포항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선포                                                                                                                                                                                                                                                                                                                 |
| 2022 | 사회 | 22.3.6              | 2022.3.4.~3.13 경북, 강원 동해안 산불 관련<br>(3.6)경북울진, 강원삼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선포                                                                                                                                                                                                                                                                                                               |
|      | 사회 | 22.3.8              | 2022.3.4~3.13. 경북, 강원 동해안 산불 관련<br>(3.8)강원강릉, 동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선포                                                                                                                                                                                                                                                                                                                 |
|      | 자연 | 22.8.22<br>'22.9.1. | 2022.8.8.~17. 집중호우 관련<br>(8.22.)서울영등포구·관악구, 경기성남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금사면·산북<br>면), 강원횡성군, 충남부여군·청양군<br>서울강남구개포1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선포<br>(9.1.)서울동작구·서초구, 경기여주시(시전체), 강원홍천군, 경기의왕고천동·<br>청계동, 용인시동천동<br>충남보령시청라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선포                                                                                                                                                                 |
|      | 자연 | 22.9.7.<br>'22.9.28 | 2022.9.3.~8. 제11호 태풍 힌남노 관련<br>(9.7.)경북포항시, 경주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선포<br>(9.28.)울산울주군온산읍·두서면, 경남통영시육지면·한산면, 거제시일운면·<br>남부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선포                                                                                                                                                                                                                                                |
|      | 사회 | 22.10.3<br>0        | 2022.10.29. 이태원 사고 관련<br>(10.30.)서울용산구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선포                                                                                                                                                                                                                                                                                                                           |
|      | 자연 | 23.1.9.             | 2022.12.17.~24. 대설한파 강풍 관련<br>(1.9.)전북순창(쌍치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선포                                                                                                                                                                                                                                                                                                                    |
| 2023 | 사회 | 4.5.                | '23년 4월 산불 관련<br>(4.5.)대전서구, 충북옥천, 충남홍성·당진·금산·보령·부여, 전남함평·순천·영주<br>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선포                                                                                                                                                                                                                                                                                              |
|      | 사회 | 4.12                | '23년 4월 산불 관련<br>(4.12.)강원강릉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선포                                                                                                                                                                                                                                                                                                                                     |
|      | 자연 | 23.8.14.            | 23.4. 4월 농작물 재해 관련<br>(8.14.)경북의성군·청송군,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br>황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북후면,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br>순흥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 상주시 모동면에<br>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안동시 길안면·예안면은 호우와 중복                                                                                                                                                                                |
|      | 자연 | 7.19.<br>8.14.      | 6.27~7.27 호우 관련<br>(7.19.)세종, 충북청주시, 괴산군, 충남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익산<br>시, 경북예천군, 봉화군, 영주시,<br>문경시, 전북김제시(죽산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선포<br>(8.14.)충북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br>남 신안군, 충북 보은군(회인면), 증평군(증평읍, 도안면), 음성군(음성읍·<br>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서수면), 고창<br>군(공음면·대산면), 부안군(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남 영암군(금정면·시<br>종면), 경북 안동시(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동문동)에 대해 특별<br>재난지역 선포 |
|      | 자연 | 8.29                | 8.9~11 제6호 태풍 카눈 관련<br>(8.29.)대구군위군, 강원고성군, 경북경주시(산내면), 칠곡군(가산면)에 대해 특<br>별재난지역선포                                                                                                                                                                                                                                                                                             |

※ 자료: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 참고3

### 농지전용허가 · 신고 심사항목 비교

| 항목                                                       |                                                                               |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신고                           |
|----------------------------------------------------------|-------------------------------------------------------------------------------|--------|----------------------------------|
| 행위 제한                                                    | 진흥지역행위제한 저촉여부                                                                 | ○      | ×                                |
|                                                          | 농지전용허가제한 저촉여부                                                                 | ○      | ×                                |
|                                                          | 농지전용신고대상 해당여부                                                                 | ×      | ○                                |
| 농지전용의<br>적정성                                             | 농지가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 ○      | ×                                |
|                                                          |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한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 ○      | ×                                |
| 전용<br>농지의<br>보전<br>필요성                                   |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여부                                                       | ○      | △<br>농지법 제10조제4항<br>농지이용차등<br>지정 |
|                                                          |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 ○      | ×                                |
|                                                          |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                                                           | ○      | ×                                |
|                                                          |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                                                          | ○      | ×                                |
|                                                          | 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                                                         | ○      | ×                                |
| 전용에<br>따른<br>인근농지<br>농업경영<br>또는<br>농어촌<br>생활환경에<br>피해 여부 | 인근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 훼손 또는 폐지 가능성                                                   | ○      | ○                                |
|                                                          |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 · 소음 발생가능성                                                 | ○      | ○                                |
|                                                          | 인근 농지의 일조 · 통풍 · 통작(通作)에 지장 초래 가능성                                            | ○      | ○                                |
|                                                          | 용수의 취수로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 가능성                                             | ○      | ○                                |
|                                                          | 피해가 예상될 경우 피해방지계획 수립의 타당성                                                     | ○      | ○                                |
| 사업 및<br>재원조달<br>계획                                       |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 ○      | ×                                |
| 타 법령<br>저촉여부                                             | 농지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가<br>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하는지여부                      | ○      | ×                                |
|                                                          | 농지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가<br>농지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br>그 사용권 제공이 관련 법령에 저촉하는지여부 | ○      | ×                                |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 제출자료('25.6.15)